

# 2018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8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총 계			<b>609명</b>			
제1회 (5.19)	소 계		<b>585명</b>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268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 소득 층	9명		
			장 애 인	18명		
		세무직 (지방세)	일 반	28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저 소득 층	1명		
		장 애 인	1명			
		전산직(전산)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급	3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저 소득 층		1명	
		장 애 인	1명			
		사서직(사서)		9급	6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공업직(일반기계)		9급	2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녹지직(산림자원)		9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보건)	일 반	9급	2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저 소득 층		1명	
		장 애 인	1명			
	간호직(간호)		8급	2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일반토목)		9급	2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2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1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 사 선	3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임 상 병 리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 리 치 료	1명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직(운전)	일 반	9급	16명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보훈청추천		5명				
소 계			<b>14명</b>			
제2회 (10.13)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직(수의)		7급	2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소 계			<b>4명</b>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1명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 서양미술사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명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소 계			<b>6명</b>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 고 졸)	공업직(일반기계)		9급	2명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직(보건)		9급	1명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1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1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9급(100분), 연구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지역제한 : 2018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사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 17세(2001.2.28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1·2·3급	
	사서직(사서)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직(미술)	연구사	·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미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사선	9급	· 방사선사
		임상병리	9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9급	· 물리치료사
	운전직(운전)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공업직(일반기계)	기술계 고 졸	9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공업직(일반전기)		9급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보건직(보건)	9급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일반토목)	9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시설직(건축)	9급		·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자	

(1) 연구직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예·보건연구직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2)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 추천서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내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지역요건은 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고문(2page) 지역제한요건 참조

- **학과성적 기준**은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이며**, 예외적으로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추천대상자(고졸자)는 기술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며, 대학중퇴자(2018.1.1.현재)도 포함합니다.
- \* 성적합산 기준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기준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기준입니다.
- \*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접수**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8. 5. 31(목) ~ 6. 7(목) (5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인사과(3층)
- 제출서류
  - 1) 추천 현황표 1부
  - 2) 학교장 추천서 1부
  -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사람
- ※ 응시 희망자는 2018. 2. 23(금)까지 대구지방보훈청 취업지원팀(☎053-230-6075)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 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시험분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1 회 (공개·경력경쟁)	3. 12(월)~3. 16(금) ※ 취소: 3. 12(월)~3. 21(수)	※토·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필기	5. 8(화)	-	5.19(토)	6.22(금)
			면접	6.22(금)	7. 7(토)	7.23(월)~7.31(화)	8. 8(수)
제 2 회 (공개·경력경쟁)	8. 6(월)~8. 10(금) ※ 취소: 8. 6(월)~8. 16(목)		필기	10. 2(화)	-	10.13(토)	11. 9(금)
			면접	11. 9(금)	11.17(토)	11.27(화)	12. 6(목)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1522-0660)

##### 나. 접수(취소)시간

○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제외)

※ 단, 제2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는 8.6(월) 09:00 ~ 8.10(금) 18:00까지 24시간 운영

#####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7,000원, 8·9급: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기준 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

#####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7.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초과합격제

**가. 실시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실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 8.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 - 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 기술직군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전산직 제외)**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보건직	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간호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운전직 제외)

구분	7급, 연구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는 ‘라’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바.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추가합격제

가.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0.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자체 출제과목인 경우 모두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구분	위탁과목수	위탁 대상과목
제1회 임용시험	3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운전직9급 제외),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제2회 임용시험	2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물리, 생물,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11. 기 타 사 항

-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사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고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사회, 과학, 수학, 회계학의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사.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아. 선택과목이 있는 직군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이전까지 대학에 재학·휴학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시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차. 필기시험에서 과학(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타.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정테이프(수정액·수정스티커)등을 사용하면 해당 답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3-803-27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 기술계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지역요건 변경

(현행) 학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 ⇒ (변경)

학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  
또는 응시자거주지 요건 충족자

#### ○ 인·적성검사 변경

(현행) 인·적성검사 ⇒ (변경) 인성검사